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이경민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차례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3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3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3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17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20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음.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여, 법안이 폐기된 바 있음.

1.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함. 그러나 이는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규제의 필요성을 명시한 법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임.
- 또한 의료, 환경, 개인정보, 교육,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반면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그리고 이는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구성임.
-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됨.

3.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 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13조, 제14조)

- 안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임.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결과만을 근거로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옥시는 1999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실험을 생략하고, 2001년 10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음.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으로 확정된 후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옥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1~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학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음. 실제 가습기살균제사고의 경우, 10월 24일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정부 신고 및 사망 판정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신고 국민 4,893명중 사망자가 20.7%인 1012명을 확인되었고, 이중 생존환자는 3,881명(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발표) 임을 감안하면 사후처리방식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 또한 영세한 기업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피해만 양산될 것임.
- 또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고 등을 통해서도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검토기간을 30일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이 불가능함.
- 기업실증특례 규정을 근거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해제되어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될 위험이 있음.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4.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8조).

- 안 제15조~제18조에 의하면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효용성만 입증되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신기술기반사업 승인은 안전성이 미흡한 단계에서 기업실증특례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기술기반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됨. 이는 자연이나 사람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생체실험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임. 신기술기

반사업 '시행중에 국민의 안전 건강 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의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 변경 및 관련시설의 철거 이전 폐쇄 등의 사후대응방식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건잡을 수 없는 환경, 의료사고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면피조항일 뿐임.

- 신기술기반사업으로는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있음. 이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전문성이 전무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심의·의결한다면 더욱 위험상 상황이 초래될 것임.

5.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짐(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 안 제36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함. 그러나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음.
-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임. 해외의 경우, 이처럼 개인정보 관련하여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 안 제39조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역발전 도모라는 미명하에 이를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안 제40조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하나, 비식별화가 식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임.

6.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함(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없음.
- 안 제43조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안 제42조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임. 그러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의 점검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 안 제45조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톤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안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대한 대상자 확대는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큼.

7.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안 제80조~82조).

- 안 제80조 등에 의하면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8.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큼(안 제49조).

- 안 제49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는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표 1>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조문별 검토)

조항	내용	문제점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에 비해 허술하거나 규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조항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임 · 정부가 제출한 유사입법사례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가 19대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높은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된 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례도 없는 법으로 20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재차 발의된 상태로 해당 소관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임. 따라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유사 입법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함	·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및 허가가 기재부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결정될 우려가 있음
제7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제13, 14조 기업실증특례	·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함	·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임.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임 ·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기업이 안전하다고 실증하며 특례를 허용하는 것임 ·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메탄을 실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그 검토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불가능함

		· 기재부는 바이오 화학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활용 불가(개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기준 등을 적용)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오히려 이법이 정한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소관법에 명문화되기 전의 주장에 불과함 · 기재부가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분야가 한정되어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경우 기업의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사항으로 기업실증특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 등과 비교하기 어렵고, (3) '산업융합 촉진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심사 기준을 고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름. · 기업실증특례 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실증특례 취소 및 사업 즉시 중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미 관련 제품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규제프리존법 상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음
제15~18조 신기술기반사업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함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이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임.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기술'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신기술기반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생물테러, 감염병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우려가 있을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 법안에서는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제31조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 역사사업자에게 국유·공유 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도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8호, 제40조3항27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정경유착의 우려가 높음
제33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	· 기업에 규제완화를 넘어서 과도한 편의 제공
제34조 재정지원	· 재정지원	
제3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를 수집.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 적용 배제함	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 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임. 차량 탑승자 및 차량이 지나가며 수집할 수 있는 와이파이망이 대상이 됨.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는 와이파이망에 접속한 일반시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큼 ·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현재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가능함 · 해외의 경우 제4차산업과 소비자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특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 최근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 수집후 다른 지역 및 타국에서 이용 및 판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허용함	·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정책임 ·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WP29)하는 규제가 있음
제42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에 의약품심사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임 ·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제조업무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재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에는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차움과 같은 영리적인 병원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제4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허용	· 신의료기기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현재 의료기기 영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판매와 이로 인한 사

		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제4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텐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제4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제58조 공유민박업	· 공유민박업을 허용함	·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 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관광숙박시설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건립 허용함	· 서울고등법원의판례(2012.1.12.선고 2010누44643판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이 (전국) 3.8% (6대광역시) 17.5% (부산) 29.0%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보건위생보호 등의 공적이익이 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회의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추가 규제완화를 허용할 수 없음
제71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시·도 조례로 트리하우스 설치 가능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제80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제81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개발이 불가능해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는 지역인 각종 보호지역 개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하수도정비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함
제82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발지 인근의 보호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사업지역만이 아닌 보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제91-93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 육성계획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특별위원회를 둠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및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	--	--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의거해 각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음.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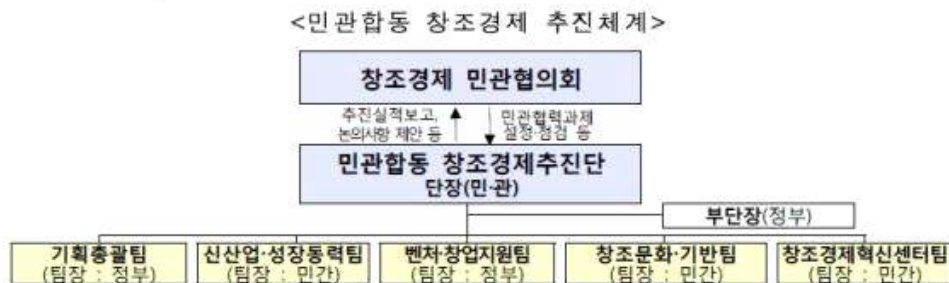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요약하면,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 관련법에 따라 ①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고 ②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사업계획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 했는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진한다는 계획을 밝힘¹ <그림 1>.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확대·개편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정책에 환류·반영하는 등 민·관의 소통·협력 강화
 - 특히,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하여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진
 - * 미래부, 경제5단체 → 기재부·미래부 등 8개 부처, 8개 경제단체



<그림 1>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그리고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구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로 되어있음².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있음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함³

1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3.7. <창조경제 실현, 민·관이 손잡고 나간다!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3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준비와 도입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의심됨.

3)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와 규제프리존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규제프리존을 “규제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표 2>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주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2.16.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을 보면,⁵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2.16.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5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업무보고, p.4

<표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 등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사업계획

-
- ①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 예)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 화장품 공동개발
 -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
-

주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업무보고, p.4

- 또한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보면,⁶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음.

<표 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

주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준비와 도입에서부터 재벌대기업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민간과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음.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련법은 물론,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운영 등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음.

6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1) 삼성과 경상북도

- 2015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⁷에 따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융합형 신사업 발굴,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 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북과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 전환을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음<표 5>.

<표 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1기 7대 상생협력 신사업 과제 관련 내용

분야	대상기업	지원기관	내용
의료기기	디알젬/루셈	삼성	이동식 X-Ray 장비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다관절로봇	삼익THK	삼성	제품 조립 다관절 로봇 국산화 S/W 개발지원, 판매 지원
영상진단	메가젠	삼성	3차원 치과영상진단 솔루션의 삼성의료원 임상실험 및 판매 지원
금형	메인텍	삼성	금형제작 프로세스/기술 고도화, CAD/CAM 및 가공자동화시스템 기술지원
센서	월드정보	삼성	신속/정확한 센서 검측 기술지원, 판매 지원
탄소소재	신영	도레이	자동차 후드 및 범퍼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차기사업 발굴 지원
3D콘텐츠	씨온	경북문화진흥원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

- 경상북도⁸의 경우,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원격의료 대상 확대,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2015.3.26.) <http://cei.go.kr/policy/39/detail>

8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 (안)>(2016.6.) <https://goo.gl/XO6c4g>

2) 네이버와 강원도

- 강원도⁹는 “혁신센터·전담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의 창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공개를 시작으로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포털’을 3단계로 나누어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한다고 함. 이 계획에 따라 아래 <표 6>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입장임.

<표 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털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

※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 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

주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 또한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¹⁰에서 규제프리존법 시행 시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산업’(대부분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5년간에 걸쳐 250억 원)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2015.8.31.) <http://cei.go.kr/policy/41/detail>

10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메모 2016-50호)

4) GS와 전라남도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¹¹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개척과 상품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전라남도가 작성한 자료¹²에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음<표 7>.

<표 7> 전라남도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MW, 조도(1.8MW))'16~'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주)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성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주 :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 전라남도가 2016년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¹³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남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언급하고 있음.
- 그리고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사업내용 중 하나인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계획¹⁴에서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관련 산업 육성,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에너지신기술 적용 산업단지 에너지절감 사업,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 한전 에너지 신산업 실증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위에서 확인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라남도는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에너지자

1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9.1.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

12 전라남도 2016.8.24.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13 전라남도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14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계획(2016.1.) 출처: <https://goo.gl/AfZnLp>

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결론

-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보았을 때,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과 실제 사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삼성의 의료사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함.

3.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을 보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기초해 있고, 재벌대기업의 현재 사업에 의존한 사업이 대다수임. 재벌대기업을 통한 사업성고가 지역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당초 표방한 창조경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음.

1)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¹⁵를 발표함. 향후 5년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고 함.
- 같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¹⁶를 발표함.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다고 밝힘. 그리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 성과가 가시화되었다고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¹⁷을 위한 자료¹⁸에서 “창조경제혁신

15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9.10.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

16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2.22.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6.10.4.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

18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6.10.4.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

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신규채용은 기존 76명(2015.8.)에서 1,443명(2016.8.)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하였음.

2) 충청북도와 LG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정부와 언론 등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LG의 성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며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는 불분명하거나 보다 정교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2016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¹⁹에서는 센터가 2015.2.4. 출범한 이후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중이라고 밝힘.
-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 진행하고 있다고 함. LG²⁰는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임.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LG는 1주년 성과에 대해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밝힘.
- 그러나 지원을 받은 101개 기업은 지원 전에도 이미 약 5,000억 원 대의 매출을 보유한 회사들이며 지원에 따라 400억 원, 즉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를 얻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고용 역시 154명의 신규채용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기업 1개 당 약 1명을 고용한 수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음.

19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2016.2.17.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그림 2>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3) 부산과 롯데

- 2016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²¹는 2015.3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함.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힘. 이 성과는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확인해볼 필요 있음.
- 또한 이러한 계획이 ‘지역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위 보도자료에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를 제시함. 그러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2016.3.6.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

4) 전라남도과 CS 등

- 2016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표한 자료²²에 따르면,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를 달성했다고 함<표 8>.

<표 8>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
- o 95개 스타트업·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 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금융·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달성
 -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

주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을 말하는 것임.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 있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을 연계했다고 설명함.
-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면서도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신규 일자리 창출, 2016년 시점에서 사업성과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2016.6.16.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